

대학AI기본교육과정개발지원사업운영규정

2026.07.08. 제정

<AI융합교육연구센터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교’라 한다)가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대학AI기본교육과정개발지원사업(이하 ‘사업’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대학AI기본교육과정개발지원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훈령 「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따른다.

제3조(사업기간) 사업기간은 본 대학교와 한국대학교육협회의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권한과 책임) 총장은 대학AI기본교육과정개발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1.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
2. 사업의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·지원
3.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, 재정적 제도의 정비
4. 사업비의 총괄적인 집행 및 관리
5. 본 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사항 준수
6.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
7.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
8.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의 이행

제5조(조직) ① 본 사업의 주관부서는 교무처 교육혁신원 소속 AI융합교육연구센터(이하 ‘센터’라 한다)로 한다.

② 교무처 교육혁신원장은 사업총괄책임자로서 사업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사업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
2. 사업실적 및 성과관리 총괄
3. 그 밖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

④ 센터는 사업 운영지원, 사업비 관리 및 집행, 세부사업을 수행한다.

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센터 및 관련 부서에 전담인력을 둘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(AI기본교육위원회) ① 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AI기본교육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, 기획처장, 교육혁신원장, AI융합교육연구센터장, 교수학습지원센터장, 학사관리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위원은 12명 이내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사업 기간으로 하되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계획의 수립·운영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사업 운영 규정 및 사업비 집행 지침의 제·개정
3. 사업비 예·결산
4. 사업계획서 및 연차평가보고서
5. 사업 운영성과 공유·확산 및 환류에 관한 사항
6. 그밖에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특정 사안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7조(사업 관리) ①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편성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운영비의 일부를 다른 회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.

② 사업비 집행은 교육부 훈령 「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」, 한국대학교육협의회 「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사업관리 운영 지침」 및 대학의 예산·회계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른다.

제8조(운영경비 및 수당지급)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학칙 및 규정을 준용하며, 그 밖에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규정 시행 전 대학AI기본교육과정개발지원사업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.